

2020.1. 1. 출산전후휴가 급여 개정 내용(14p)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상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단태아	90일 기준 상한 540만원 (30일 기준 상한 180만원)	90일 기준 상한 600만원 (30일 기준 상한 200만원)
다태아	120일 기준 720만원 (30일 기준 상한 180만원)	120일 기준 800만원 (30일 기준 상한 20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04호, 2019.12.31, 일부개정)

2020.3.31. 육아휴직 급여 개정 내용(45p)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0.3.31.)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 일반 노동자와 동일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4~6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7~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개정법 적용방법	개정법 공포일(2020.3.31.)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공포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법 적용됨.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2020.3.31. 육아휴직 급여 개정 내용(46p)

사후지급금 지급예외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0.3.31.)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좌 동
예외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 지급)	근로계약 기간 종료	근로계약 기간 종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개정법 적용방법	개정법 공포일(2020.3.31.) 기준 육아휴직 종료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도 개정법 적용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